『하루의 행복, 부산김해경전철이 함께합니다.』

공사특기시방서

< 역사하부 부식판넬 교체공사 >

2018. 12.

시설팀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공사특기시방서
< 역사하부 부식판넬 교체공사 >

1 총 칙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김해경전철(주)(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발주한 **"역사하부 부식판넬 교체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따른다.

2) 작업일반

가)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본 공사에 대한 부산-김해경전철(주)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가설재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내판, 위험표지판, 기타 안전시설에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 반입 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간 동안 타 공종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마) 철거된 자재를 감독이 지정한 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철거재, 제작 작업시 및 잔재 운반시 주변에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여야 한다.

사) 제작 설치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전, 후)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시공 완료 후 2부 제출. (사진첩 1부, 별도 양식에 의거 사진 1부, 기타 필요에 의해 촬영한 사진은 USB에 저장 보관하여 1부 제출토록 한다.)

2 시공내용

가 공사장소 및 범위

1) 공사장소 : 2개 역사 역사하부

2) 공사물량 : 총 2개 역사, 역사 하부판넬 47개소

- 등구역 42개소, 지내역 5개소

3) 공사범위 및 공사내용 : 역사하부 부식판넬 및 누수 보수

- 기존 부식판넬 및 달대 보수(제거 후 청소 및 재설치)
- 누수 보수(누수부위 보수 및 유도배수판 설치)

① 기존 부식판넬 해체 및 철거

② 기존 부식판넬 및 강재 청소(부식 심하지 않은 곳)

③ 기존 강재 절단 및 철거(부식 심한 곳)

④ 신규 강재 설치(용접)

⑤ 누수부위 확인 및 보수(실란트 보수 및 유도배수판 설치)

⑥ 신규 판넬 및 점검구 설치(발주자 위치 지정)

⑦ 역사 벽체 우수유입지점 보수

※ 부식 상태에 따른 청소 및 교체공사범위는 현장 감독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4) 시공관련 참고도면(2개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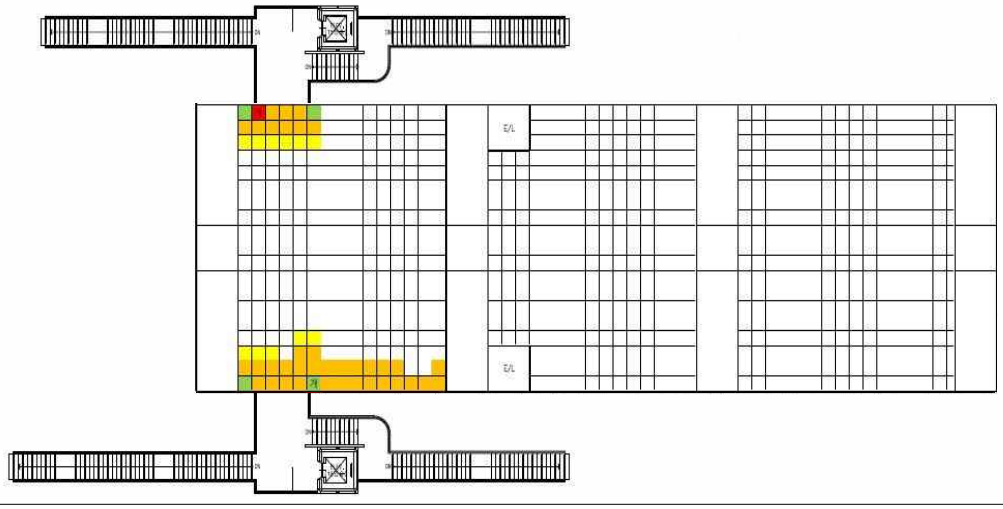

등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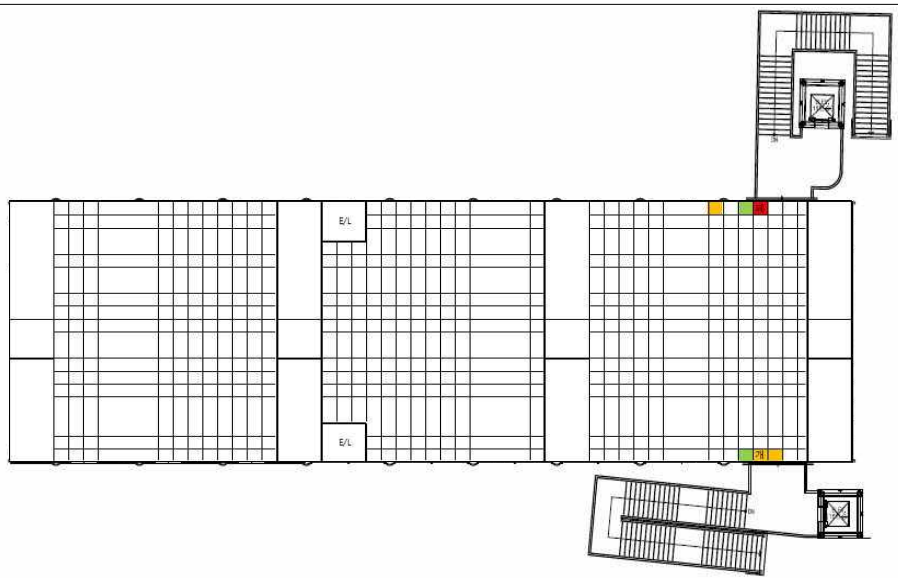

지내역

※ ■ : 임시 점검 개구부, ■ : 교체대상 판넬, ■ : 신설예정 점검구

나 재료, 시공시 주의사항 및 검사

1) 재 료

가) 하부 판넬 및 강재의 크기 및 규격은 현 시설물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판넬은 복합알루미늄 판넬 또는 그에 준하는 반영구적 내식성을 가진 판넬을 사용한다.

다) 시공 후 흔들림이 없고 외부 풍하중을 충분히 견뎌야 한다.

라) 시공 전 자재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신규 자재는 녹이 발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설치 시 외관도장이 벗겨져서는 안된다.
바) 달대의 연결은 선용접을 기본으로 한다.
사) 설치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가) 역사 하부 이동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작업한다.
나) 고소작업 시 자재 및 공구류가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며, 필요시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한다.
다) 특히 자재의 절단 및 용접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작업시 철골구조물 훼손을 최소화 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기타 필요시 감독자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한다.

3) 검 사

가) 설치완료 후 자체검사 실시하고, 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현장 및 공사부위의 청소를 반드시 완료한 후 감독자 검사를 받는다.

4) 준공승인 및 대가지급

○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대금지급 의뢰를 "발주자"에게 요청하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회계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한다.

3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작업장에는 "작업중" 이라는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나) 고소작업 시 하부 차량통제에 따른 차로차단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첨부 공사구간 차로통제 계획도 참조)

다) 당일 작업 종료 시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수거하여 일괄 반출토록 한다.

라) 현장 내 모든 출입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필요시 안전장구를 휴대 착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측의 판단에 의해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될 시는 "발주자"측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손실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중 불미스러운 언행이나 폭행, 절도, 불법단체 결성 난동, 작업방해 및 속칭 "사보타지"를 하는 자, 제반수칙에 불복하는 자 등은 입법조치나 추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 직원지시에 불성실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당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즉시 추방해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불이행할 시는 최고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

4 품질 보증 기간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발주자"의 회계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